

# 대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외국과의 제도 분석 연구

권 정 훈 (경동정보대학 경호합기도과 교수)

김 태 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A system analysis research for a terrorism law of  
prevention enactment of the foreign country.**

Kwon, Jeong-Hoon

Kim, Tae-Hwan

## Abstract

Every country finds a way to respond a lot of terrors to keep her safe in many ways. Our country, before a terror outbreaks, makes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strengthening informational ability to countermeasure terror, restricting for terrorists to enter or exit from our country, restricting other countries to input weapons in our country to prevent from terror in the aspect of precaution.

A terror is more grave than any other one in behavior, and the criminals have to be punished so much and be discriminated from other ones, too. So, a concept of general crime and terror has to be defined. It is finished in the academic area to some extent, but, it is not sufficient in lawful area so much.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nter-terror protection laws regulating terror crimes direc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concretely and clearly the terror activity and deduc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Key words : Terrorism, Definition, Action, The legislative system]

## I. 서론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한 연구 기관에 의하면, 테러리즘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제시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Alex p. Schmid and Albert J. Jongman, 1998:1-59 ; 박준석, 2006:13 ; 최진태, 2006:17). 이는 테러리즘의 주체, 이념, 동기, 대상, 범위 등의 포함 여부 및 행위의 시각, 나아가 시대적 변천과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 및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다.<sup>1)</sup>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하면(김순규, 1997:430-431; 박준석, 2006:13-14) 해커는 테러리즘을 대중의 행동, 사상, 감정을 테러리스트 자신들의 행동, 사상, 감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였고<sup>2)</sup> 윌킨스(Paul Wilkinson, 1987)는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살해 및 파괴 그리고 살해와 파괴에 대한 협박을 함으로써 개인, 단체, 특정 공동체 혹은 정부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어 테러리즘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국가 내에서도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시대에 따라 미비한 테러리즘의 정의를 보완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최진태, 2006:22) 테러리즘의 정의는 다양하게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최근에 우리 국민의 피해사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2007년 2월 27일에는 아프간 바그람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아프간 현지인의 기능공 집체교육 대상자 인솔 및 출입조치를 위해 현장에 있던 한국군의 다산부대 통역병 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2007년 5월 15일에는 우리선원이 승선한 마부노 1·2호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지금까지 협상 중에 있으며 피랍선원구출을 위해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1) 미국의 경우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법무부 심지어 동일 부처인 국방부는 1983년과 1986년에 각기 다른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Frederich J. Hacker, 임희승(역),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3) 우리선원이 승선한 마부노 1·2호가 피랍된 소말리아 해역에서 최근 해적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어선의 조업활동 및 항행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소말리아는 지난 1991. 1 「바레」대통령이 축출된 후 내전으로 해상의 치안부재가 계속되자 해적이 출몰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난해 6월 과도정부를 축출한 이슬람반군이 소말리아를 일시 장악하여 단속을 강화하자 해적사건이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금년초 이슬람 반군이 과도정부-에티오피아군에 패퇴하면서 금년 들어 10건이 발생하는 등 해적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 19일에는 우리나라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랍되어 한국인 남자인질 2명을 살해, 여자인질 2명이 석방되었고 한국정부는 탈레반 대표와의 지속적인 대면협상을 통해 남은 인질 19명 전원을 석방하면서 결국 41일 만에 모든 막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더 이상은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대처방안의 입법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리즘의 정의 없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대테러리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도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도출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최진태, 2006:23).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차원의 입법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통해 테러의 정의 및 그 법령상의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함으로써 향후 대테러방지법안 제정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외국어의 문헌에 기초하여 조사를 한 결과와 테러의 각종 국내·외 연구 문헌과 보고서 및 선행자료, 논문, 관련서적, 간행물, 언론매체의 보도자료 등 2차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 II. 법제적 테러리즘의 논의

### 1. 미 국<sup>4)</sup>

미국의 법령에 있어서 통일적인 테러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령마다 목적에 응하는 각각의 테러 정의가 내려져 있다. 주요 정의<sup>5)</sup>는 다음과 같다.

- 4) 미국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에 있어서 테러리즘대책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간행되었지만 법제에 관련한 주요한 것은 井樋三枝子<9.11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에 있어서 테러리즘 대책>외국의 입법(2006년 5월) 24항
- 5) 또한 연방규칙 제 28편0.85(1)에 의한 FBI장관은 테러행위에 관련한 읽기(상대방을 읽음)에 이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다른 에이전시는 테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FBI에 통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있어서 <테러리즘>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의 추진을 도모하며 정부, 시민 또는 이들의 일부를 협박 또는 위압하기 위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서 폭력을 위법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井樋<9.11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에 있어서 테러리즘 대책>30항).

## 1) 범죄에 관한 정의

범죄 및 형사수속에 관해서 정해진 합중국 법전 제 18편에 있어서는 종전대로 <국제테러리즘>의 정의가 되어 있지만 2001년의 애국자법에 의해 개정되고 이것에 입각하여 <국내 테러리즘>의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同編 제 2331조에 제정한 테러리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18편 제 2331조를 살펴보면

### (1) “국제테러리즘“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 ① 폭력행위 또는 인명에 위협을 미치는 행위로 합중국 또는 주의 형법의 위반이 되거나 또는 합중국이나 주의 재판관할 지역 내에서 행한 때에 범죄행위로 되는 것에 관한 행동
- ② 다음의 어느 것에 의도로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지는 활동
  - 민간인을 협박 또는 위압하는 것
  - 협박 또는 위압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 대량파괴, 암살 또는 약탈 유괴로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 ③ 실행의 수단, 협박 또는 위압의 대상에 되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또는 그 행위범이 활동하거나 또는 잠복처를 찾아 구하는 장소의 관점에서 주로 합중국의 영역 재판관할권 외로 또는 국경을 넘어 일어나는 활동

### (2) “국내 테러리즘“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 ① 인명에 위협을 미치는 행위로 합중국 또는 주의 형법의 위반이 되는 것에 관한 활동
- ② 다음의 어느 것에 의도로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지는 활동
  - 민간인을 협박하고 또는 위압하는 것
  - 협박 또는 위압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 대량파괴, 암살 또는 약탈유괴에 의해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 ③ 주로 합중국의 영역적 재판관할권의 내에서 행해진 행동  
이들 정의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국제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나라로서 지정된 나라와의 사정을 알고 해당국의 정부와 금융거래에 관여한 행위의 처벌<sup>6)</sup>
  - 국제 테러리즘을 위해 피해를 받은 합중국 국민의 손해액의 3배 배상 등 청구권<sup>7)</sup>

6) 18 U.S.C. 2332d(a) (2001)

7) 18 U.S.C. 2333(a) (2001)

또 同編에는 “테러리즘의 연방범죄”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18편 2332b조(g)에서

**(3) “테러리즘의 연방범죄”는 다음의 범위를 말한다.**

(A) 협박 또는 위압으로 정부의 행위를 지배하고 또는 영향을 주며 또는 정부의 행위에 보복한다고 평가되는 것

(B) 다음에 기재된 규정의 위반

- (i) 이 編의 제 32조(항공기 또는 항공기시설의 파괴에 관한 것), 제 37조(국제공항에서의 폭력에 관한 것), 제 81조(특별 海事재판관할 및 영역적 재판관할 내에서의 방화에 관한 것), 제 175조 또는 175b조(생물무기에 관한 것), 제 229조(화화무기에 관한 것), 제 351조a항, b항, c항 또는 d항(연방의회의원, 각료 및 최고재판소 판사의 암살 및 약탈유괴에 관한 것), 제 831조(핵물질에 관한 것), 제 842조 m항 또는 n항(플라스틱 폭탄에 관한 것), 제 844조 f항(2) 또는 (3)(정부의 부동산에 방화하고, 폭파하고, 죽음의 위협에 두며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관한 것), 제 844조i항(州齊통상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방화 및 폭파에 관한 것), 제 930조 c항(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연방시설에 대한 공격에 있어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관한 것), 제 956조 a항(1)(해외에서 사람을 모살하고 약탈유괴하며 또는 장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공동모의에 관한 것), 제 1030조 a항(1)(컴퓨터의 보호에 관한 것), 제 1030조 a항(5)(B)(ii)부터 (v)까지의 규정에서 정의되는 손해를 일으키는 제 1030조 a항(5)(A)(i) (컴퓨터의 보호에 관한 것), 제 1114조(합중국의 직원 및 이용자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관한 것), 제 1116조(외국 관료, 손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자의 모살 또는 고살에 관한 것), 제 1203조(인질행위에 관한 것), 제 1362조(통신회선, 국 또는 시스템의 파괴에 관한 것), 제 1363조(합중국의 특별해사 재판관할 및 영역적 재판관할 내의 건조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에 관한 것), 제 1366조a항(에너지시설의 파괴에 관한 것), 제 1751조a항, b항, c항 또는 d항(대통령 및 대통령 참모의 암살 및 약탈유괴에 관한 것), 제 1992조(열차전복에 관한 것), 제 1993조(대량운송 시스템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그 외 폭력행위에 관한 것), 제 2155조(나라의 방위용 자료, 시설 또는 설비의 파괴에 관한 것), 제 2280조(해운운항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 제 2281조(해운용의 고정된 플랫폼(maritime fixed platforms)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 제 2332조(합중국 국민에 대해 합중국 외에서 행해지는 일정의 살인 행위 그 외 폭력에 관한 것), 제 2332 a조(대량파괴 병기의 사용에 관한 것), 제 2332 b조(국경을 넘은 테러리즘

- 에 관한 것), 제 2339조(테러리스트를 숨기는 것에 관한 것), 제2339조 A조(테러리스트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 제2339조 B조(테러리스트 조직에 물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관한 것), 또는 2340 A조(고문에 관한 것)
- (ii) 1954년 핵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of 1954) 제 236조(42 U.S.C. 2284) (핵 시설 또는 핵연료의 파괴행위에 관한 것)
- (iii) 제 49편 제 46502조(항공기 침탈에 관한 것), 제46504조 후단의 규정(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폭행에 관한 것), 제 46505조 b항(3) 또는 c항(항공기상 폭파 또는 발화장치 또는 무기에 의한 인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 살인행위 또는 살인미수행위가 동반한 경우 제 46506조(항공기상의 행위에 대한 일정의 형사법의 통용에 관한 것), 또는 제 60123조 b항(가스 또는 위험한 액체용의 州際 파이프라인시설의 파괴에 관한 것)

“테러리즘의 연방범죄“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해당범죄에 행한 자를 은닉 또는 비닉한 자의 처벌<sup>8)</sup>
- 해당범죄의 행한 자에 대해 물적 지원 제공의 처벌<sup>9)</sup>

## 2)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의<sup>10)</sup>

1990년 이민법에 있어서 “테러리스트 행위“에 종사한 것이 입국거부사유 등에 추가되었다.<sup>11)</sup> 그 후 개정을 한 2006년 현재에 있어 “테러리스트 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8편 1182조 (a)(3)(B)를 살펴보면 이 법률에 있어서 “테러리스트 행위“란 이 법령영역에 있어 위법한 행위로 다음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8) 18 U.S.C. 2339 (2001)

9) 18 U.S.C. 2339A (2001)

10) 테러대책 등의 관점에서 미국의 이민법제에 대하여 상세히 논한 것으로 松林高樹<미국에 있어서 이민관련 법제의 개요와 치안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上)(下)> 경찰학논집 제 57권 2호(2004년 2월) 148항 및 同卷 3호(같은 해3월) 149항. 또 애국자법 이후의 입법동향으로써 井樋三枝子<테러대책과 출입국관리관련 입법동향-2001년 미국애국자법부터 2005년 REAL ID 법까지->외국 입법 제227호(2006년 2월)137항. 또한 헌법논의 관점에서 小谷順子<미국에 있어 출입국관리의 테러대책법제><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25항

11) 松林<미국에 있어서 이민관련 법제의 개요와 치안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上)> 161항 및 小谷 33항. 또 1996년의 반 테러 및 효과적 사형법에 의한 국무장관에 의해 지정된 외국테러조직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외국 등 거부사유에 추가됨과 더불어 같은 해의 불법이민관련 개혁 및 이민 책임법에 의한 죽음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키는 의도를 가리키는 상황아래 테러행위를 선동한 것이 입국 등 거부사유에 추가되게 되었다. (松林<미국에 있어서 이민관련 법제의 개요와 치안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下)> 174항)

- ① 항공기, 선박, 자동차 그 외의 운송기관의 공중(해상) 납치 또는 파괴
- ② 구속된 자의 해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행한 것 또는 행하지 않는 것을 제3자(정부기관을 포함)에 대해 강요하기 위해 타인을 구속하고 살해, 상해 또는 구속을 계속하는 것을 협박하는 것
- ③ 국제적으로 보호된 자 또는 해당자의 자유에 대한 폭력행위
- ④ 암살
- 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대한 사실적 손해를 끼치는 의도로 행한 다음에 게재한 것의 사용(단순히 개인적인 금전에 기인한 것은 배제한다.)
  - 생물제, 화학제 또는 핵에 관한 무기 또는 장치
  - 폭발물, 병기 그 외의 병기 또는 장치
- ⑥ 상기에 게재한 행위의 협박, 미수 또는 공모

상기와 같이 이 같은 “테러리스트 행위”의 종사는 입국거부사유 등으로 되는 것 외의 테러단체로서 지휘 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와 구성원 등은 입국거부의 대상이 되어 있다.<sup>12)</sup> 또한, 지정된 단체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행하는 것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해당단체 등의 자금을 점유하는 금융기관은 그 점유를 계속함과 더불어 해당자본인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sup>13)</sup>

### 3) 외국첩보감시에 관한 정의

합중국법전 제 50편 제 36장에는 1978년 제정된 외국첩보감시법에 의해 외국첩보감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바, 同 章에 있어서 “국제 테러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50편 제 1801조(c)에서 “국제 테러리즘”이란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합중국 또는 주의 형법에 위반이 되고 또한 합중국 또는 주의 재판지역에서 행해진 범죄행위가 되는 폭력행위 또는 인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활동
- ② 다음의 어떤 의도가 인정되는 활동
  - 민간인을 협박하고 또는 위압하는 것
  - 협박 또는 위압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 암살 또는 유괴에 의해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12) 和III 84항

13) 和III 85항

- ③ 실행의 수단, 위압 또는 압박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실행범이 활동하고 또는 잠복처를 찾는 장소에 관해 합중국의 국외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생기는 활동

외국세력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국제 테러리즘”으로부터 합중국의 능력을 지키는 것에 관계한 정보는 同 章에 규정<sup>14)</sup> 외국첩보·정보에 해당하고 외국첩보감시로서 통신방수 등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5)</sup>

#### 4) 국무성에 관한 정의

제 22편 제 2656 f조(d)에서 “테러리즘”이란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계획적 폭력으로 준국가적 단체 또는 비밀 정보부원에 의한 非전투원에 대해 행해진 것을 말한다.

해당 정의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국무장관 하원의장에 대한 연차보고<sup>16)</sup>
- 해당 테러리즘에 관여한 조직 출입국규제 등에 관계한 테러 단체로서 지정(既述)<sup>17)</sup>

## 2. 일 본

일본의 법률에 관해서는 소위 테러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sup>18)</sup> 테러를 규정하는 것으로<sup>19)</sup>는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14) 50 U.S.C. 1801(e)(1)(B) (2002)

15) 和田 82항

16) 18 U.S.C. 2656f(a) (2006)

17) 8 U.S.C. 1189(a)(1)(B) (2006)

18) 政令레벨은 경찰청 조직령(1954년 政令 제 180호) 제 39호(국제테러리즘 대책과) 제 1항에 테러리즘이란 광의적 의미에서 공포 또는 불안을 안게 하는 것에 의해 그 목적 달성하는 것을 의도로 행해지는 정치상 그 외 중의 주장에 기초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9) 또한, 파괴활동방지법(1952년 법률 제 240호)은 그 입법경위로 봐서 본 고에서 의논된 테러를 가정해 제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同法에 규정하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은 테러방지관련조약에 있어 대상이 되지 않는 내란과 외환(외국과의 사이에 일어나 분규)유치 등을 이것에 포함시키는 한편, 하이재킹(항공기 강취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Sarin(신경중독제의 하나. 무색, 무취의 액체)의 발산(사린 등에 의한 인신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1995년 법률제 78호)등 많은 테러행위를 이것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본고에 있어 테러를 가정한 규정은 게재하지 않았다.

### 1) 테러자금 처벌법<sup>20)</sup>

테러자금 방지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은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제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 67호 이하 “테러자금 처벌법“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同 조약은 기존의 테러방지관련 조약에 있어서 범죄화를 의무 부여한 행위 및 기존의 테러방지관련 조약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된 것은 아니지만 테러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주민의 위협 또는 정부 등에 대한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살상행위를 전체 범죄로써 규정하고 그와 같은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의 제공 및 수집에 관한 독립 죄로써 처벌하는 것을 의무 부여하는 바, 일본의 법제에 적합한 형태로 해당 전체 범죄인 테러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테러자금처벌법에 있어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가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제1조 이 법률에 있어서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란 공중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외국정부 등(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조약 그 외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관을 말한다)을 협박하는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범죄행위로 다음 각 호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람을 살해하고 또는 흉기 사용 그 외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미치는 방법에 의해 그 신체를 상해하고 또는 사람을 약탈하고 또는 유괴하며 인질을 삼는 행위
- (2-1)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시켜 전복시키거나 또는 침몰시키고 또는 그 항행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
- (2-2) 항해중의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또는 전복시키고 또는 그 항해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
- (2-3)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사람을 저항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고 항해중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강탈하고 또는 원하는 대로 운항을 지배하는 행위
- (2-4) 폭발물을 폭발시키고 방화하고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을 파괴하고 그 외 이것에 대단한 손해를 주는 행위
- 3) 폭발물을 폭발시키거나 방화하고 또는 그 외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방법으로 이것을 파괴하고 그 외 이것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행위
  - ① 전차, 자동차 그 외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을 이용하는 차량이며 공용 또는 공중의 이용에 사용되는 것 또는 그 운행용으로 이용되는 시설(②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 同法の 입안담당자에 의한 해설로서 小川新二 외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조시보 54권 10호(2002년 10월) 1항

- ② 도로, 공원, 역 그 외 공중의 이용으로 하는 시설
- ③ 전기 또는 가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수도 시설 또는 하수도 시설 또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시설이며 공용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④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석탄 또는 핵연료인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생산하고 정제 그 외 연료로 하기 위한 처리를 하고 운송하며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 ⑤ 건조물(①부터 ④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이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자 등은 그 국외범도 포함키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제 2조 및 제3조). 또한, 同 法の 부칙 개정에 의해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136호 이하<조직범죄처벌법>라고 함)이 개정되고 해당자금이 조직범죄 처벌법 제 2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범죄수익>으로 된다. 이것에 의해

- 제공, 수집된 자금 또는 그 미수에 관계한 자금 등이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금전책권인 경우의 몰수(조직범죄 처벌법 제 13조 제 1항)와 이들의 재산이 아닌 경우의 추징(同法 제 16조 제 1항)
- 제공, 수집된 자금 등의 은닉행위(제 10조 제 1항)와 수수행위(제 11조)의 처벌
- 금융기관 등이 업무에 있어 받아들인 재산이 이들 자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의 각각 대상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2006년 개정에 의해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 그 예비행위 또는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범무대신이 인정하는 자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1951년 정령 제 319호 이하 <출입국관리법>라고 함) 제 24조에 규정하는 퇴거강제 이유로써 정비되어 있다.

## 2) 자위대법<sup>21)</sup>

현재 간접침략 그 외 긴급사태에 관해서는 내각총리장관이 치안출동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자위대법 제 78조).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의 발생을 받아들여 치안출동에 해당하는 사태가 아니어도<sup>22)</sup> 중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 자위대로 경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1년 자위대시설 및 제일미군 시설을 경비하기 위한 경호출동(同法 제 81조의 2)이 정비되어 있다.

21) 군대를 치안유지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제도에 관해 村木 一郎<군대를 치안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제도>경찰학논집 54권 12호(2001년 12월) 1항

22) 2001년 10월 15일 중의원 국제 테러리즘 방지 및 일본의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 村井국무장관(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답변

(자위대 시설 등의 경호출동)

제 81조의 2 내각총리장관은 일본에 있는 다음에 기재한 시설 및 구역에 있어 정치상 그 외 주의주장에 기초하여 국가 또는 타인에 이것을 강요하고 또는 사회에 불안 또는 공포를 주는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살상하고 또는 중요한 시설 그 외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구역의 경호를 위해 부대 등의 출동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상 그 외 주의주장에 기초하여 국가 또는 타인에 이것을 강요하고 사회불안 또는 공포를 주는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살상하고 또는 중요한 시설 그 외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는 소위 대규모 테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sup>23)</sup>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sup>24)</sup>에 있어서는 내각총리장관은 자위대시설 및 재일미군 시설을 경호하기 위해 부대 등 출동을 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무기 사용 등의 경찰관직무집행법(1948년 법률 제 136호)이 출동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부대 등 자위관의 직무의 집행에 대해 준용되고 있다(자위대법 제 91조의 2).

### 3) 사태대처법

2003년에 성립한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 79호 이하 <사태대처법>이라 함)은 당초 무력공격사태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었지만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의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 112호 이하 <국민보호법><sup>25)</sup>이라함)의 심의

- 
- 23) 2001년 10월16일 중의원 국제 테러리즘 방지 및 우리나라의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中谷국무장관(방위청 장관) 답변
- 24) <대규모 테러공격이 행해질 우려가 있어 그 테러공격의 형태나 상태를 고려하면 특히, 자위대의 높은 능력을 이용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답변되어 있다.(2001년 12월 16일 중의원 국제 테러리즘의 방지 및 우리나라의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中谷국무장관 답변
- 25) “국민보호법”은 유사시 국가가 경보를 발령, 피난을 지시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수용시설과 식량확보,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 활동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04.6.18 공포하여 04.9.17 시행되었다. 명칭은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로 일본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유사법제 10개 법안 중 1개이며 소관부서는 일본 내각관방부장관(안전보장·위기관리 담당)이다. 목차 구성은 제8장 194조로 총칙, 피난조치, 구원조치, 무력공격재해 대처, 기타, 재정상 조치, 긴급사태 대처 조치, 벌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국가의 책무와 배려사항으로 1.통칙과 2.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국민보호 조치, 3.국민보호를 위한 조치, 4.국민보호 기본지침, 5.국민보호 계획, 6.광역자치단체국민보호협의회·기초자치단체국민보호협의회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2장 피난조치, 제3장 구원조치, 제4장 무력공격재해 대처 조치, 제5장 기타, 제6장 재정상 조치, 제7장 긴급사태에 대처 조치,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에 있어서 대규모 테러 등에 있어 국민보호를 상정한 정부안의 <긴급사태대처>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사태대처법에 이행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sup>26)</sup>

긴급사태대처방침에 따르면 제 25조 정부는 긴급사태대처(무력공격의 수단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태 또는 해당행위가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되는 사태(후일 대처기본방침에 있어 무력공격사태인 것의 인정이 행해진 사태를 포함)로 국가로서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에 이를 때에는 긴급사태대처에 관한 대처방침(이하 <긴급사태대처방침>이라 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사태대처“의 사례는

- 위험성을 내재하는 물질을 갖는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 행해진 사태
  -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파괴
  - 석유コンビ너트, 도시가스 저장시설 등의 파괴
- 다수의 사람이 집합한 시설 및 대량운송 기관 등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사태
  - 대규모 집객 시설, 터미널 역 등의 폭파
  - 신칸센 등의 파괴
- 다수의 사람을 살상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사태
  - 방사성물질을 혼입시킨 폭탄 등의 폭발에 의한 방사능의 확산
  - 탄저균등 생물체의 항공기에 의한 다량살포
  - 시가지 등에 있어 사린(Sarin 신경중독제의 하나)등 화학제의 다량살포
  - 수원지에 대한 독소 등의 혼입
- 파괴의 수단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한 공격이 행해진 사태
  - 항공기 등에 의한 다수의 사망자 등을 동반한 자폭테러가 가정되고<sup>27)</sup> 긴급대처사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치가 강구되었다.

### 3. 한 국

테러리즘 혐의자에 대한 감시 추적과 수사를 위해서 관련 법적 장치가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테러리즘 위협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를 위한 단일 법안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대테러리즘 활동기반은 대통령훈령 제 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sup>28)</sup>이 유일하고 테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26) 崎陽輔<무력공격사태대처법의 읽기>(행정 2004년) 108항

27) 국민의 보호에 관한 기본지침(2005년 3월 각의결정) 제 5장 (긴급대처사태의 대처)제 1절(긴급사태대처)

28)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1982년 1월 21일 대통령훈령 제47호로 제정되어 1997년과 1999년 그리고 2005년에 각각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테러의 예방·방지 및 범인색출 등 전 과정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안(부칙포함 총 5장 29조)을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하였으나 2004년 5월 16대 국회의 입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어 지금은 현행법상 테러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은 없고 다만, 형법의 일부 규정이나 특별법 중 일부 조항이 테러리즘 규제를 위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호에서 국제테러범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테러”라 함은 테러분자 등이 각종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이익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요인 및 그 가족의 납치·암살
- ② 항공기 및 선박의 납치·폭파
- ③ 해외체류 외교관·유학생·상사원·취업근로자 및 해외여행자 등의 억류 및 납치·암살
- ④ 국가중요시설<sup>29)</sup>·다중이용시설 및 재외공관 등에 대한 공격
- ⑤ 국내 정계·재계 등 각계 주요인물의 납치·암살
- ⑥ 주한외교사절 및 체류한 외국저명인사의 납치·암살
- ⑦ 폭발물·총기류·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무차별 인명살상
- ⑧ 기타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적 범법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했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내용 중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

29) 국가중요시설이란 공항(항공기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경비업법시행령 제2조). 국가보안목표란 군사전략상 적에게 노출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여 지정된 시설이다. 통합방위지침상의 국가중요시설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며 국가정보원에서 지정, 하달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나 시설의 등급여부에 따라 지정내용이 상이하므로 매년 중요시설 지정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중요시설의 방호책임은 당해 시설의 장 또는 시설주에게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자체방호책임은 각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에게 있다(김용욱, 2004:25). 국가중요시설의 분류는 형식적 분류와 실질적 분류로 구분하는데 형식적 분류는 다시 행정시설과 산업시설로 나뉜다. 행정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중앙부처기관, 한국은행, 지방관청 등이 있으며 산업시설에는 일반산업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방송, 통신시설 등이 있다. 실질적 분류는 가급, 나급, 다급, 기타급으로 나뉘는데 가급은 국방·국가기간산업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이고 나급은 국가보안상 국가 경제·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이며 다급은 가보안상 국가 경제·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이다. 기타급은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로서 중요도는 희박하다(이윤근, 1998:256).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불법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 ① 국가요인 및 그 가족, 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 ②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방화·폭파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 ③ 항공기·선박·열차·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 ④ 폭발물·총기류 기타 무기를 사용한 위협 또는 무차별한 인명살상
- ⑤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 또는 살포라고 되어 있으며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경사 또는 집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 ①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 ②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을 말하고 “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테러범죄의 수사 등을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 Ⅲ. 각국의 법제적 비교분석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일본은 테러리즘과 관련한 법적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상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테러리즘의 의의와 관련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테러리즘과 국내테러리즘을 막론하고 테러리즘의 정의에서 ‘민간인을 협박하고 위압하는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처음에 언급하고 있고 일본은 테러자금처벌법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의 정의에서 사람의 살해, 신체의 상해, 약탈, 인질 등의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있어서 테러의 정의에 ‘국민에 대하여’라는 막연한 언급만 되어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요인 및 가족, 국내 정계, 재계 등 각계 주요인물, 주한외교사절 및 체류한 외국저명인사, 해외 체류자들에 국한하고 있어 민간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행위로 단순히 납치, 암살로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협박, 위협, 상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테러의 행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범죄에 관한 정의에서 항공기시설 파괴, 국제공항 폭력, 항공기 승무원 폭력, 열차전복, 대량운송시스템 공격, 해운운항 폭력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정의에서는 자동차 그 외 운송기관의 납치, 파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테러자금처벌법에서 전차, 자동차, 그 외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을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구체적 언급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납치, 폭파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시설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통신회선, 국 또는 시스템 파괴, 에너지시설 파괴, 방위용 자료 시설 또는 설비파괴, 주제 파이프라인시설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자금처벌법에서 '도로, 공원, 역 그 외 공중 이용시설, 전기 또는 가스시설, 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석탄, 핵연료물질 저장 시설, 건조물'로 사태대처법에서는 '원자력발전시설 파괴, 석유컴비너트, 도시가스 저장시설 파괴, 대규모 집객 시설, 터미널 역 폭파, 신칸센 파괴, 교통기관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재외공관의 공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넷째, 테러행위의 공격무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재판관할 내의 방화, 주제통상의 부동산 방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플라스틱 폭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사태대처법에서 '방사성물질, 탄저균 등 생물제, 사린(Sarin)등 화학제, 독소혼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폭발물, 총기류, 유해화학물질<sup>30)</sup>'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한 것과 강하지 않지만 장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성이 강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테러행위의 공격무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매년 200여종이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독성이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지금까지 각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비교분석을 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로서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고 한국에는 현재 3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종이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표 2-1> 각국의 테러리즘 법제적 비교분석

각국 요소	미 국	일 본	한 국
대상(사람)	'민간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사람의 살해, 신체의 상해, 약탈, 유괴, 인질'	'국민에 대하여'
주관적 요건(목적)	협박 또는 위압, 대량파괴, 암살 또는 약탈 유괴로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목적	주민의 위협 또는 정부 등에 대한 강요를 목적	각종의 목적
운송수단 행위유형	항공기시설 파괴, 국제공항 폭력, 항공기 승무원 폭력, 열차전복, 대량운송 시스템 공격, 해운운항 폭력, 자동차 그 외 운송기관의 납치, 파괴	전차, 자동차, 그 외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을 이용하는 차량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납치, 폭파
시설공격	통신회선, 국 또는 시스템 파괴, 에너지시설 파괴, 방위용 자료 시설 또는 설비 파괴, 주계 파이프라인시설 파괴	도로, 공원, 역 그 외 공중이용시설, 전기 또는 가스 시설, 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석탄, 핵연료물질 저장 시설, 건조물, 원자력발전 시설 파괴, 석유컴비너트, 도시가스 저장시설 파괴, 대규모 집객 시설, 터미널 역 폭파, 신칸센 파괴, 교통기관 공격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재외공관의 공격
공격무기	재판관할 내의 방화, 주계 통상의 부동산 방화, 생물 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플라스틱 폭탄	방사성물질, 탄저균 등 생물물체, 사린(Sarin)등 화학제, 독소혼입	폭발물, 총기류, 유해화학물질

#### IV. 결론 및 제언

각국에서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에 대한 대비를 위해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국제협력체제의 강화, 대테러 정보 역량의 강화, 테러리스트들의 국내 출입 규제, 국내 무기반입 규제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테러 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테러리즘의 활동 기반은 대통령훈령 제47호가 유일하나 이는 국가 대테러 활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고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최진태, 2006:354-355).

테러는 그 행위에 있어서 일반범죄보다 중한 범죄임이 마땅하기에 확연한 구분으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범죄와 테러의 개념 정립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문적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됐지만 아직까지 법률적 부분은 미흡하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테러방지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테러리즘의 입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테러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앞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테러의 행위와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경비업법시행령 제2조」.
2. 김순규. (1997), 「현대국제정치학」, pp.430-431, 서울: 박영사.
3. 김용욱(2004), “공항보안의 발전에 관한 연구 : 보안요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25.
4.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5. 박준석(2006), 「뉴테러리즘개론」, pp.13-14, 서울: 백산출판사.
6. 이윤근(1998), 「경찰경비론」, p.256, 경찰대학.
7.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pp.354-355, 서울: 대영문화사.
8. Alex p. Schmid and Albert J. Jongman. (1998), Political Terrorism : A New Guide to Actors, Authers, concepts, Data Bases. Theories and Literature. Amsterdam : SWIDOC.Frederich J. Hacker, 임희승(역).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9. 井樋三枝子(2006.5), “9·11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에 있어서 테러리즘 대책”, 24항.
10. 井樋, “9·11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에 있어서 테러리즘 대책”, 30항.
11. 栢林高樹(2004.2), “미국에 있어서 이민관련 법제의 개요와 치안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上)(下)”, 警察學論集 제57권 제2호, 148항 및 同券 3호 149항, 立花書房發行.
12. 井樋三枝子(2006.2), “테러대책과 출입국관리관련 입법동향 - 2001년 미국애국가자법부터 2005년 REAL ID법까지-”, 외국 입법 제227호 137항.
13. 小谷順子, “미국에 있어 출입국관리의 테러대책법제”,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25항.
14. 栢林, “미국에 있어서 이민관련 법제의 개요와 치안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上)”, 161항 및 33항.
15. 栢林, “미국에 있어서 이민관련 법제의 개요와 치안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上)”, 174항.
16. 小川新二(2002.10),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법조시보 54권 10호 1항.
17. 村木一郎(2001.12), “군대를 치안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외국제도”, 警察學論集 제54권 제12호 1항.
18. 崎陽輔(2004),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의 읽기”, 108항.
19. 8 U.S.C. 1189(a)(1)(B), 2006.

20. 18 U.S.C. 2332d(a), 2001.
21. 18 U.S.C. 2333(a), 2001.
22. 18 U.S.C. 2339, 2001.
23. 18 U.S.C. 2339A, 2001.
24. 18 U.S.C. 2656f(a), 2006.
25. 50 U.S.C. 1801(e)(1)(B), 2002.
26. 和田 82항.
27. 和田 84항.
28. 和田 85항.

논문접수일 : 2007년 9월 10일

심사의뢰일 : 2007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12일